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3. 12. 19.(화)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기수(위원장), 김종헌, 김태일, 나창순, 송석기, 이광표, 이상희, 이혜은, 한경순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문화재위원회 규정」제10조에 따라,

-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문화재위원회 규정」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문화재위원회 규정」제9조 및「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2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통영 해저터널」현상변경	(공 개)
2	사적「구 서울역사」,「환구단」현상변경(재심의)	(공 개)
3	「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4	「홍영식 복명문답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5	「목포 금화동 3-8번지 가옥」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6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등록(면적) 변경 고시 보고	(공 개)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23-12-01

1. 국가등록문화재「통영 해저터널」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통영 해저터널」외관 및 내부를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통영 해저터널」외관 및 내부를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통영 해저터널」('05.9.14. 등록)

※ 수량/면적 : 터널 1기, 길이 483m, 폭 5m, 높이 3.5m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당동 406 외 18필지, 미수동 907-1 외 14필지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외관 변경 및 내부 변경

- 외관 변경(건축물 건축)

● 당동 진출입부

· 건축면적(연면적) : 1,159.47㎡(1,800.21㎡)

· 층수 : 지상 2층 · 구조 : 철골구조

· 높이 : 11.2m · 폭 : 11.1m

● 미수동 진출입부

· 건축면적(연면적) : 1,129.22㎡(1,800.52㎡)

· 층수 : 지상 2층 · 구조 : 철골구조

· 높이 : 11.2m · 폭 : 11.1m

- 내부 변경(전시 구조물 설치)

· 벽체형, 터널형, 연출구조물형

※ 483m 등록구간 내(8개 존, 14개 아이템 기획)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3.6.15.) : 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의 목적과 해당문화재 보존, 활용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및 이를 사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 보완

○ 사업구간별 계획내용과 시설 등이 해당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 보완

○ 사업시설 설치 이후 문화재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 보완

○ 상기 보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각 사업구간별로 도면 및 이미지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신청(안)은 통영 해저터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출석 9명 / 부결 9명

안건번호 근대 2023-12-02

2. 사적「구 서울역사」,「환구단」 현상변경(재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구 서울역사」지정구역 및 「환구단」주변에 GTX-B 노선을 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서울역사」 지정구역 및 「환구단」 주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이하 GTX-B) 노선을 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3.9.26.): **보류**
  · 지질, 토목, 구조 등 관계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방안 마련 후 재심의
- '23년 제7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23.11.22.): **조건부 가결**
  · 서울역사 지하 구조물·주변 지하수위 확인 및 지하수 계측 계획 수립
  · 진동 및 지하수위 계측기 실시간 계측장비로 계획
  · 공사 중 발파진동 0.1cm/sec 이하로 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가철도공단

(2) 대상문화재명

○ 사적「구 서울역사」('81.9.25. 지정)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

○ 사적「환구단」('67.7.15. 지정)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구 서울역사」: 당해구역, 1구역(개별심의), 2구역(도시계획 조례)
- 「환구단」: 1구역(원지형 보존), 2구역(개별심의), 3구역(도시계획 조례)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5m이격

○ 신청내용 : 지하 철도노선 통행 터널 굴착, GTX-B 서울역 정거장 신설

- 터널 굴착
  - 지표면으로부터 49.3m(구 서울역사), 76m(환구단) 아래 굴착(NATM 굴착공법)
    *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발파를 이용한 터널 굴착방식으로 천공, 발파, 버력처리, 지보재 설치 순으로 굴착하는 공법
  - 규모: 터널 높이 8.63m, 폭 11.98m (환구단 지하 동일)
- GTX-B 서울역 정거장 신설(환승통로 포함, 문화유산 지하 39.0m 깊이)
  - 제어발파공법, 지하철 1호선 정거장 서측면에 인접 설치(환승 연계)
  - 개착정거장(지하 3층), 터널정거장(지하 2층), 환기구* 2개소, 환승통로
    * 공사범위 중 문화재와 가장 인접: 환기구 개착구조부(40m이격)
  - 외부출입구 : 기존 1호선 서울역 출입구 활용
  - 피난계단 : 정거장 시종점 각 1개소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 의결을 따르되 환구단 주변 제어 발파구간을 명기할 것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안건번호 근대 2023-12-03

3.「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양평군 소재「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3.6.27.)를 거쳐 등록 예고한「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	117점	221×67 등	1947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2.11.11.)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청 → 문화재청)

○ ('23.5.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3.6.27.) :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가결'**

(4) 등록예고 : '23.7.11.~8.10.(30일간) ***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5.3.)

- 만장(輓章)은 전통 장례식에 사용된 것으로, 망자의 덕과 업적을 기리는 문구를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들어, 주검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간 것이므로 망자를 기리는 사람들의 부의(賻儀)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원래 만장은 3년 상을 치른 뒤에 소각하는 것이지만, 여운형 사후 한국전쟁 등으로 혼란한 가운데 유족이 보존하고 있었으며, 만장이 남아 있는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임.

- 여운형 장례식 만장은 만장 자체가 남아 있기 어려운 유물이므로 희소 가치가 있으며, 또한 항일운동가인 여운형의 죽음은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대립과 정치적 대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므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며, 원본성과 유일성도 있음. 따라서 여운형 장례식 만장은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23.5.3.)

-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차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 장례식 당시 사용된 만장으로, 몽양의 장례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몽양의 역사적 위상과 그의 정신과 사상을 적은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여운형 장례식 만장은 몽양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장례식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한국근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의 만장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다고 판단됨

○ ○○○○○○○ ○○ ○○○('23.5.3.)

- 여운형은 항일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해방후 건국준비위원회·좌우합작운동 등의 대표적 대중정치인으로 암살이라는 극적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여운형 만장은 개인의 역사, 해방정국이라는 인물과 시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현대사의 고비를 상징하는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
- 여운형 장례식에서 사용한 만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원본성·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다른 기관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만장 비교·검토 등 추가 연구 필요

○ 출석 9명 / 보류 9명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23-12-04

4.「홍영식 복명문답기」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개인 소장「홍영식 복명문답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홍영식 복명문답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6.8.)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10.12.)를 실시하였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장자	소재지
홍영식 복명문답기	1건	278.51 × 21.5	1883년 11월 추정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1.3.~'21.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홍영식 복명문답기」 포함 총 39건을 등록가치가 있는 A등급으로 선정

○ ('22.1.20.)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결과 알림
(문화재청 → 서울특별시)

○ ('23.6.8.)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 → 문화재청)

○ ('23.10.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10.12.)

- '홍영식 복명문답기' 문서의 작성 경위와 전래 과정의 확인이 어렵고 '승정원일기'에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점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보빙사의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문답을 통하여 당시 고종의 대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

○ ○ ○○○○○ ○○○○ ○○○('23.10.12.)

- 「홍영식 복명문답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견미사절단 '보빙사'의 전권부대신 홍영식이 귀국 후 국왕과 외교활동과 미국에서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적 문서로서, 국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23.10.12.)

- 본 유물은 1883년 보빙사 전권부대신 홍영식의 복명문답으로서 보빙사의 이동경로, 미국 내 활동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음. 기 등록 자료인 이상재기록, 이범진의 미사일록보다 선행하는 자료로서, 수교 직후 미국의 문물제도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 및 한미 간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희소성 있는 자료임. 자료에 나타난 고종과 홍영식의 문답 내용을 통해 당시 조선정부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내용상 문화재로서 등록할 가치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보류

- 해당 문서의 제작 경위 및 작성일자 등 자료 보완 필요

○ 출석 9명 / 부결 4명, 보류 5명

안건번호 근대 2023-12-05

「목포 금화동 3-8번지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 금화동 3-8번지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10.1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11.3.)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목포 금화동 3-8번지 가옥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금화동 3-8번지

○ 소 유 자 : ○○○

○ 수　　량 : 1동

○ 건립시기 : 1936년 추정

○ 구조 및 규모 : 목조, 지상 2층(연면적 188.49㎡)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3.10.1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남도 → 문화재청)

○ ('23.11.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3.11.9.)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전라남도, 목포시)

- 대상 가옥의 해방 이후 소유관계 변화, 화재 이력·보수 및 수리관련 기록 등

○ ('23.11.27.) : 보완자료 제출(목포시 → 문화재청)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11.3.)

- 중규모의 일본식 가옥으로 서양식 응접실이 절충된 근대기 가옥의 특징적인 공간 구성 및 목구조의 보존 상태 등이 우수하나, 목부재의 가공이나

구성에서의 섬세함이 다소 미약하고 마감 재료에서 많은 변형이 확인됨.

- 향후 건축물의 원형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가옥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 및 구조, 세부 의장 요소의 보존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3.11.3.)

- 건축사적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 건축적 특징들이 다소 훼손되었고 증축으로 인한 변형 등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옥의 건립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건축적 내용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희소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으나, 해방 이후이긴 하지만 일본식 가옥에 우리나라의 바닥 난방설비가 접목된 사실은 주거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기에,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어 시·도등록문화재로의 등록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재전문위원 ○○○('23.11.3.)

- 해방 이전 및 이후까지도 지역의 유지들이 주로 소유하였고 생활했던 공간으로 상징성이 큰 편이며 해당 주택의 토대가 되는 응회암 석축은 조성연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건축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요소라고 판단됨.
- 건축물 자체가 가진 건축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큼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건축물의 입지조건, 해방 이후 공간의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9명 / 부결 9명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23-12-06

6.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등록(면적) 변경 고시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의 등록 면적을 변경하여 고시('23.12.18.)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1)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04.12.31. 등록)

(2) 처리내용: 등록 변경 고시('23.12.18.)

(3) 변경사항: 등록 면적

지번	지목	대지면적(㎡)	등록면적(㎡)	
			당초	변경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대	34,469.9	371.77	411.9

(4) 변경사유: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등록 면적 현행화

(5) 사전 서면검토

○ ('23.11.28.)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의 등록 면적 변경 고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실시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에 대한 등록 면적(구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 및 고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